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2. 15 선고 2020가단2972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12. 1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5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22,320,75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2,320,7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병구

별지